

(우)04427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46길 37 [http://www.kma.org] / 전화(02)6350-****/ 전송(02)790-8911
보험국 국장 김기성[6574] 보험급여팀장 김선우[6576] 팀원 박송이[6593]/ E-mail : kmarbrvs@naver.com

문서번호 대의협 제811-16127호

시행일자 2023. 3. 27.

수 신 수신처 참조

참 조

제 목 신의료기술의 안전성·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발령 안내

1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-52호(2023.3.24.)

2. 상기 근거와 관련,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‘신의료기술의 안전성·유효성 평가결과 고시’를 첨부와 같이 개정하여 고시한 바, 이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- 다 음 -

가. 고시문 일부변경

○ 신의료기술 일부변경

- 775. 비소세포성 폐암에서 BRAF, ROS1, EGFR 유전자를 포함한 23종 유전자 정성검사 [염기서열검사]

○ 혁신의료기술 일부변경

- 4.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에서 심근재생을 위한 자가 말초혈액 줄기세포 치료술

나. 신설

○ 신의료기술 신설

- 907. RET 유전자 돌연변이 [염기서열검사]

- 908. 헬멧을 이용한 비침습적 양압 환기법

○ 혁신의료기술 신설

- 9. 선택적 망막 치료술

첨부

1) 신의료기술의_안전성·유효성_평가결과_고시(제2023-26호)_일부개정안 1부.

2) 신의료기술의_안전성·유효성_평가결과_고시_전문 1부. 끝.

대한 의 사 협 회 장



“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”

수신처 : 각 시도지사회장, 대한의학회장, 각 전문학회장, 대한개원의협의회장, 각과 의사회장